

2024. 2. 21.(수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2월 21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미래한강본부 운영부

운영부장

김세정

3780-0801

운영총괄과장

박태수

3780-0804

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: 2쪽

담당자

정송희

3780-0807

서울시, 한강 매점 무단영업 손해소 승소… 배상금 61억으로 재정확충 기여

- 과거 한강공원 내 매점 운영자 계약만료 후 무단점유에 대한 강력한 대응조치 일환
-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 등 2곳 대상…승소하며 6년간 이어진 소송 종지부
- 61억 배상금 수령해 불법영업 손실 메꿔…무단 점유 시 배상금 부과 등 적극 대응

- 서울시가 6년 전 운영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한강 매점에서 무단영업을 지속한 간이매점 운영자 협의체,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와의 손해배상 소송 2건 모두 승소, 총 61억 원의 배상금을 확보해 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게 됐다.
- 서울시는 양 컨소시엄 업체와 각각 2008년, 2009년 한강에 매점을 조성하고 향후 8년 동안 운영한 뒤 시에 시설을 반납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. 2016년과 2017년에 매점 운영 허가 기간이 종료했으나 양 컨소시엄 업체 모두 기간 만료 이후에도 1년여간 불법으로 영업을 지속했다.
- 서울시는 계약종료 후에도 무단영업을 계속하는 업체를 퇴거시키고 매점을 시로 귀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며, 이후 사업자가 불

법영업으로 얻은 부당이득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각각 2017년과 2018년에 청구했다. 대법원은 작년 말 양 업체에게 시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.

- 서울시는 이번 판결로 대법원까지 6년 이상 이어진 소송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, 이번에 수령한 손해배상금으로 6년 전 사업자의 불법영업으로 인한 손실을 메꾸고 시민 편익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.
- 시는 이번 소송 외에도 한강 매점 허가 기간 만료 후에도 무단 점유를 하는 경우 소송과 변상금 부과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.
-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“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재산은 시민의 편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.”며 “앞으로도 민간 운영자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.”고 말했다.